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오피스텔 분양광고

HOBAN
SUMMIT

▣ 분양상담전화(1670-6207)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3.07.14.)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10%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3.07.13,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 · 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3.07.13, 광고일과 다름)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주택청약통장 · 주택청약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개군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개군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로 청약신청은 불가하며, 군별로 청약신청만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이 공급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본 오피스텔은 100실 미만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수분양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오피스텔은 군별 20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현황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관계법령 제 ·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체결과 관련한 상세 일정은 당첨자 발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시간대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니, 당첨자분의 협조 바랍니다.

■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07월 26일(수)	08월 01일(화) 16:00 이후	08월 03일(목)(10:00~14: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1층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 · 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본 광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과 – 7978호(2023.07.13.)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2016–용산구–도시환경시행인가 – 1호(2016.03.25)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임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 일원(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3,610.20㎡(오피스텔 : 730.54㎡ 중 일반분양 436.39㎡)
• 건축물 연면적 : 53,676.47㎡(오피스텔 : 10,861.71㎡ 중 일반분양 6,481.86㎡)
• 건축물 층별 용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오피스), 판매시설
• 공급규모 : 지하 8층 ~ 지상 39층 1개동 중 오피스텔 9~15층 총 77실 중 일반분양 49실
• 주차대수 : 총 299대 (자주식299대) [공동주택(아파트) 167대, 일반업무시설(오피스) 33대,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77대, 판매시설 22대]

■ 분양사업자, 분양대행사 및 시공자의 명칭 : 분양사업자 :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 / 분양대행사 : (주)씨앤디플래닝 / 시공자 : ㈜호반건설

■ 입주예정일 : 2025년 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 정비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내진설계 등급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5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음.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038g으로 이는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지반가속도(S)	지반의 종류	중요도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176	S_D	1.2	D	I	6.0

■ 건축물 층별 용도

구분	용도
지하8층~지하2층	발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부대시설, 자주식주차장
지하1층~지상3층	판매시설
지상4층~지상8층	일반업무시설(오피스)
지상9층~지상15층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지상16층	피난안전구역
지상17층	공동주택 부대시설
지상18층~지상39층	공동주택(아파트)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 실, ㎡)

군	타 입 (약식표기)	공급호실(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1군	34A	7	34.9664	19.8852	54.8516	42.5171	97.3687	6.4575
	34B	7	34.9812	19.4789	54.4601	42.5352	96.9953	6.4602
2군	42A	4	42.4853	22.3787	64.8640	51.6596	116.5236	7.8461
	42B	7	42.6461	22.4216	65.0677	51.8552	116.9229	7.8758
	42C	6	42.9964	22.6525	65.6489	52.2811	117.9300	7.9405
	43	1	43.9132	23.1574	67.0706	53.3959	120.4665	8.1098
3군	63	7	63.3023	32.0198	95.3221	76.9719	172.2940	11.6905
	65	4	65.7764	33.7187	99.4951	79.9802	179.4753	12.1474
	66	6	66.1300	34.2509	100.3809	80.4102	180.7911	12.2127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서울시 용산구)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 타입 및 공급호실

군	타입	공급호실수	공급대상		비고
			거주자 우선(배정호실수)	일반(배정호실수)	
1군	34A	7	1	13	※ 1인 1실 청약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34B	7			
2군	42A	4	1	17	
	42B	7			
	42C	6			
	43	1			
3군	63	7	1	16	
	65	4			
	66	6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실)

군	타입	공급호수	호	층구분	해당호실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차(15%) 2023.12.15	2차(15%) 2024.04.15	3차(15%) 2024.08.15	4차(15%) 2024.12.15	입주지정일
1군	34A	7	11호	9층	1	456,924,619	263,250,346	26,325,035	746,500,000	74,650,000	111,975,000	111,975,000	111,975,000	111,975,000	223,950,000
				10~11층	2	458,760,887	264,308,285	26,430,828	749,500,000	74,950,000	112,425,000	112,425,000	112,425,000	112,425,000	224,850,000
				12~13층	2	460,107,483	265,084,106	26,508,411	751,700,000	75,170,000	112,755,000	112,755,000	112,755,000	112,755,000	225,510,000
				14~15층	2	461,515,288	265,895,193	26,589,519	754,000,000	75,400,000	113,100,000	113,100,000	113,100,000	113,100,000	226,200,000
	34B	7	1호	9층	1	456,190,112	262,827,171	26,282,717	745,300,000	74,530,000	111,795,000	111,795,000	111,795,000	111,795,000	223,590,000
				10~11층	2	458,026,380	263,885,109	26,388,511	748,300,000	74,830,000	112,245,000	112,245,000	112,245,000	112,245,000	224,490,000
				12~13층	2	459,372,976	264,660,931	26,466,093	750,500,000	75,050,000	112,575,000	112,575,000	112,575,000	112,575,000	225,150,000
				14~15층	2	460,780,781	265,472,017	26,547,202	752,800,000	75,280,000	112,920,000	112,920,000	112,920,000	112,920,000	225,840,000
2군	42A	4	5호	9층	1	561,469,461	323,482,308	32,348,231	917,300,000	91,730,000	137,595,000	137,595,000	137,595,000	137,595,000	275,190,000
				10~11층	2	563,734,192	324,787,098	32,478,710	921,000,000	92,100,000	138,150,000	138,150,000	138,150,000	138,150,000	276,300,000
				13층	1	565,386,833	325,739,243	32,573,924	923,700,000	92,370,000	138,555,000	138,555,000	138,555,000	138,555,000	277,110,000
	42B	7	7호	9층	1	550,513,064	317,169,942	31,716,994	899,400,000	89,940,000	134,910,000	134,910,000	134,910,000	134,910,000	269,820,000
				10~11층	2	552,777,794	318,474,733	31,847,473	903,100,000	90,310,000	135,465,000	135,465,000	135,465,000	135,465,000	270,930,000
				12~13층	2	554,430,435	319,426,877	31,942,688	905,800,000	90,580,000	135,870,000	135,870,000	135,870,000	135,870,000	271,740,000
				14~15층	2	556,083,076	320,379,022	32,037,902	908,500,000	90,850,000	136,275,000	136,275,000	136,275,000	136,275,000	272,550,000
	42C	6	8호	9층	1	550,513,064	317,169,942	31,716,994	899,400,000	89,940,000	134,910,000	134,910,000	134,910,000	134,910,000	269,820,000
				10~11층	2	552,777,794	318,474,733	31,847,473	903,100,000	90,310,000	135,465,000	135,465,000	135,465,000	135,465,000	270,930,000
				12~13층	2	554,430,435	319,426,877	31,942,688	905,800,000	90,580,000	135,870,000	135,870,000	135,870,000	135,870,000	271,740,000
				14층	1	556,083,076	320,379,022	32,037,902	908,500,000	90,850,000	136,275,000	136,275,000	136,275,000	136,275,000	272,550,000
	43	1	4호	9층	1	561,469,461	323,482,308	32,348,231	917,300,000	91,730,000	137,595,000	137,595,000	137,595,000	137,595,000	275,190,000
3군	63	7	9호	9층	1	818,791,779	471,734,746	47,173,475	1,337,700,000	133,770,000	200,655,000	200,655,000	200,655,000	200,655,000	401,310,000
				10~11층	2	822,097,060	473,639,036	47,363,904	1,343,100,000	134,310,000	201,465,000	201,465,000	201,465,000	201,465,000	402,930,000
				12~13층	2	824,606,626	475,084,885	47,508,489	1,347,200,000	134,720,000	202,080,000	202,080,000	202,080,000	202,080,000	404,160,000
				14~15층	2	827,054,983	476,495,470	47,649,547	1,351,200,000	135,120,000	202,680,000	202,680,000	202,680,000	202,680,000	405,360,000
	65	4	6호	9층	1	850,008,330	489,719,700	48,971,970	1,388,700,000	138,870,000	208,305,000	208,305,000	208,305,000	208,305,000	416,610,000
				10~11층	2	853,436,030	491,694,518	49,169,452	1,394,300,000	139,430,000	209,145,000	209,145,000	209,145,000	209,145,000	418,290,000
				12층	1	856,006,804	493,175,633	49,317,563	1,398,500,000	139,850,000	209,775,000	209,775,000	209,775,000	209,775,000	419,550,000
	66	6	10호	9층	1	832,380,160	479,563,491	47,956,349	1,359,900,000	135,990,000	203,985,000	203,985,000	203,985,000	203,985,000	407,970,000
				10~11층	2	835,746,651	481,503,045	48,150,304	1,365,400,000	136,540,000	204,810,000	204,810,000	204,810,000	204,810,000	409,620,000
				12~13층	2	838,256,216	482,948,895	48,294,889	1,369,500,000	136,950,000	205,425,000	205,425,000	205,425,000	205,425,000	410,850,000
				14층	1	840,765,782	484,394,744	48,439,474	1,373,600,000	137,360,000	206,040,000	206,040,000	206,040,000	206,040,000	412,080,000

※ 상기 공급금액은 층별,향별,개방감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한 금액입니다.

■ 오피스텔 공통사항
• 계약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법 = 형별 면적(㎡) × 0.3025)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대지지분은 대지면적을 해당 용도의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이는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 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기계실, 전기실, 복도, 계단, 로비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층,향,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분양금액에는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대상 오피스텔 49호실은 9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약 신청 전 견본주택(1670-6207)을 방문하셔서 상세 호실별 오피스텔 공급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계획에 따라 거실 (특히 65타입 거실) 또는 침실에 기둥이 위치하며, 그에 따른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모형도 · 홍보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함)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건축물의 공사 감리자의 공정확인서상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고지 및 안내가 없는 한 상기 예정 일자에 따라 중도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II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 1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우선 선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3.07.14.)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개군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개군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타입별로 청약신청은 불가하며, 군별로 청약신청만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신청 유형별(군별) 200%의 예비당첨자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07월 26일(수) (09:00~17:30)	08월 01일(화) 16:00 이후	08월 03일(목) (10:00~14: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 군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견본주택 방문계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1층)	

※ 청약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청약통장 취급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청약신청 안내

구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 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비고
모든 군 공통	5,000,000원 (금 오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 및 사전분양홍보관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3.07.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층 · 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 군별 200%를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아래 당첨자 발표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은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호실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3년 08월 01일(화) 16:00이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
층 · 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군별 층 · 호수를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군별 200%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 안내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수의 분양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 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계약 호실에 대해 호실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모집은 건축허가 사항 및 계약 장소에 비치한 설계도서에 준하여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III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공급금액 납부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2023년 08월 03일(목) 10:00 ~ 14: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1층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공급금액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호실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유효하며, 아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시행자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별도 지정일에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내 유니트 관람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체결과 관련한 상세 일정은 당첨자 발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시간대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니, 당첨자분의 협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명	납부계좌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604–006693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201호 당첨자 "홍길동" → "12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납부 :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 당사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 수납불가)
•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 : 계약 체결 시 호실별 별도 가상계좌가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시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확인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계약자 인감도장 및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1통)
법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용도:오피스텔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및 사업자 등록증 •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1통(용도: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내 비치) 1통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 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 광고일(2023.07.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본인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수의 분양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로 귀속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 주변 및 인접부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소음, 진동 등),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오피스텔, 아파트, 오피스, 판매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 ·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는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기타 제세공과금 역시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해 호실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리주체 등에 의해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 · 대출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오피스텔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 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단, 중도금대출 알선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액 :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최대 60% 무이자 적용(단, 정부 정책 및 금융권 그리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조건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사업주체에서 부담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 부담입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중도금 대출 혹은 본인 자금 조달시에는 별도의 이자지원 및 할인은 적용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60% 내에서 알선하며, 시행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출 불가로 인한 자납 또는 입주지정기간 전에 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는 그 금액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할 경우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 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및 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납하여야 합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5년 3월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행정명령, 관련법령의 제정/개정, 주요질병(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 재난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금액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호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입주개시일 1개월 전)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지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판매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시 재산의 하자보수책임,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관련법에 따릅니다.

IV 기타 유의사항

※ 본 분양 광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본사항	• 오피스텔 단지배치 및 층, 향, 호수별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이후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오피스텔 분양광고 9개 타입의 평면 중 견본주택에는 1개 타입(65)이 설치되어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타입과 라인에 따라서는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점 확인 후 계약 체결 바랍니다. • 공급 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형별 면적(㎡) ＊ 0.3025 또는 형별 면적(㎡) ÷ 3.3058)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호실에 대한 호실구획(호수 및 면적조정) 및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광고문 및 관련 홍보물에 표시된 분양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할애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당 전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즉 준공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대지지분을 제외한 계약면적의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정산 처리되며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은 용도별로 별도 구분되어 분양되는 시설이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오피스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건축물로서, 인허가 사항에 따라 주차장 면적은 지상/지하로 배분하여 계약면적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용승인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호실 내 · 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배치구조 및 층 · 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으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등으로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오피스 등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해당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은 추후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과 구조부재(기둥, 보 등)의 크기, 위치,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본 오피스텔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용도제한 업종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중 잔금납부 개시일은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건축법 제22조 3항 단서에 따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점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50%는 사용 승인일 이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 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 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평면도 및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으며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에 표현된 내용(부대시설,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 견본주택 및 사전분양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과 관련된 분양 홍보물상 조감도, 사전분양홍보관 및 견본주택의 모형도 등에 표현된 입면은 실시공 시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관계자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하여 가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오피스텔의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 실내 무단출입 및 실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 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광고문 및 관련 홍보물에 표시된 분양 면적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6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광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최초 분양광고 공고 전 배포된 홍보물 또는 사업주체에서 배포하지 않은 홍보물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관련 사항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각종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당첨 및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주지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국일간지에 분실광고를 내고 2주일 후 공증받은 뒤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할 시에만 공급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급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판매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층의 공유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사항은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사전분양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한 뒤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 시공 중에 샘플실 및 현장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의 협의 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사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대행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시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 시 소방법에 맞게 설치됩니다.
분양광고, 광고물 관련 사항	• 각종 광고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조성계획(국제업무지구, 공원, 유보지 등)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인근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관계기관의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합니다. • 본 광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견본주택 또는 사전분양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종홍보물 및 견본주택 또는 사전분양홍보관에 표시, 설치된 시설의 색상 및 크기, 형태, 작동방법은 실 착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또는 사전분양홍보관에 설치된 각종 사인물, 가구, 가전제품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디스플레이(전시용품)용으로 실제 시공 시 설치되지 않으며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문프레임 규격 및 색상 및 형태, 외벽 마감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은 계약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부대복리시설, 주변환경, 제연휀룸 및 휀룸용 드라이에어리어(DA), 부지 고저차,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와 출입문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사전분양홍보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서 등 각종 인쇄물, 모형 및 CG(조감도, 투시도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카다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실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또는 사전분양홍보관 및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사전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건물의 명칭, BI, 색채 계획 등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심의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에 따라 단지 BI 설치 여부 및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분양광고 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사전분양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다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또는 사전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일반가구, 수납공간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내부 및 단지 내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 · 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 현관문, 도어 및 점검구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디퓨져, 전열교환기 및 바닥 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다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 외부 관련사항	• 초등학교는 한강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북서측 한강대로(40m도로), 남서측 서빙고로(30m도로), 북동측 및 남동측에 연결녹지가 설치되어 차량 통행 및 보행자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배정 관련 사항은 계약 전 계약자 본인이 직접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등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입주 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 및 향후 계획된 도로의 설치로 인해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해당 오피스텔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타 시설의 이용자와 주차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여야 하고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타 시설 간에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실의 지도 ·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본 사업부지 주변 개발사업으로 인해 추후 사생활권, 조망권,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광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정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근린공원 및 공공시설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주체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시행계획도서, 카달로그, 단지모형 등의 단지 외부도로, 진입도로는 사업시행계획승인시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따라 반영되었고, 추후 교통영향평가 변경이 있을 경우 단지 내,외부도로, 진입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출입구 위치 및 형태는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제한된 대지 형상, 크기 및 정비사업지침 등에 따라 단위유닛별 일조, 조망, 환기 등에 대한 성능의 차이가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등을 통해 단위유닛별 컨디션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최고 39층 높이의 건축물로 상부층에는 빌딩풍, 해풍, 역풍 등의 영향으로 일반 A/C 실외기(정속형)를 사용할 경우, 냉방성능저하 및 작동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으로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시설군이 존재함에 따라 사전에 유의하시고,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 부주의로 미확인 시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과 외부시설물의 위치,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계획승인 상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이 업무 또는 영업 등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외관은 커튼월 형태로 되어 있으며 그로인해 벽식구조 아파트와 다르게 난방비 및 냉방비등의 관리비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외관은 커튼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커튼월 자재 특성상 외부의 기후적, 환경적 요인등으로 인해 약간의 움직임이 발생하며 그로인해 작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외관은 커튼월 형태로 되어 있으며 내부 벽체는 코어부위를 제외한 건식벽체로 되어 있음. 그로인해 세대간, 실간 기준치 이내의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외관은 커튼월 형태로 되어 있어 일부 결로가 발생할수 있으며 하부쪽 결로수 받이가 설치되어 있어 필요시 물기를 닦을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커튼월과 건식벽체 만나는 부위는 필요에 따라 마감상 일부 비전구간이 마감판으로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소방관 진입창과 완강기 설치부위는 24T복층 유리로 시공되며 단열부족 및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및 설계계획상 일부 시각적 간섭 및 공용시설 조명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변 여건에 따라 도로, 교통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사생활 침해, 외풍, 소음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각 용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조경 및 공용시설에 장비반입구, 한전소유의 전기설비 설치공간(한전패드), 가스 관련 시설, 맨홀, 우수조, 실외기, 급배기구 및 재활용폐기물보관소, 재활용 창고(분리수거 공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냄새, 진동, 소음, 해충,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사전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법적 기준 내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오피스텔로서, 타시설로 부터의 소음,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외부/내부 마감, 재질 및 색채 계획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또는 해당 호실의 특화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들에 대해 현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설치된 시설들의 고장 및 수리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 일부 특화를 위하여 주변에 설치된 조명시설은 계약자 임의로 옮길 수 없으며, 조명에 의해 일부 내부에 빛이 들어갈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 조명의 위치나 빛의 세기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일부 특화를 위하여 내외부 및 주변에 설치된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세 및 관리비용은 입주민의 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물 내 부대시설(관리실, 방재실, 우편함, 자전거 거치대, 재활용폐기물보관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은 현장여건 따라 입주시 카다로그, 모형 및 투시도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아파트 또는 건물의 시각적 간섭, 소음, 분진, 냄새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위치는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 통로는 입주민 외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거나 폐쇄할 수 없으며, 관리유지비 발생 시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북서측 한강대로변에 공개공지가 2개소 설치 예정이며, 동측으로 연결녹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모든 시설이 1개소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설계 유의사항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단, 추가지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지반종류 및 내진설계범주, 반응수정계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효지반가속도(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176	S_D	1.2	D	I	6.0

설계 유의사항	• 본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MMI) 등급 VII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 0.2038(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 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본 공사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구조계획에 따라 일부 실 내 기둥이 위치할 수 있으며, 층고 및 천장고는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관련 도면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해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계획에 따라 거실 (특히 65타입 거실) 또는 침실에 기둥이 위치하며, 그에 따른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모형도 · 홍보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내용은 호실 및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내부 가구(붙박이장, 주방가구)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에는 별도의 마감을 시공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계획에 따라 일부호실의 출입문의 방향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에 안내된 것과 반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별 현관문 및 방화문, 점검도어, 핸드레일, 유리 등은 본 공사시 제조사, 유리, 하드웨어, 프레임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생활환경 여건에 따라 창호에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인접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사전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부대시설(관리실, 우편함, 재활용폐기물보관소 등)은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 내) • 입주 시 불법구조 변경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 출입구의 사이즈,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이 있으며, 건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보행동선 및 입면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피스텔 및 타 시설의 각종 기계설비배관,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량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은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의 경우 벽체 위치 및 문(출입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되는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 내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 개수 및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는 향후 풍압, 풍동 등의 구조시험, 추후 본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결과 및 입주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재질, 사양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관리 및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호실 천장내부에 공용배관 및 덕트, 상부실 배관 등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이 설치되어 소음발생 및 유지보수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철거 및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에 의해 벽체 철거/변경시 벽체에 설치된 기구, 배관, 배선 등은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공사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일부가 돌출 및 셋백으로 인하여 일조 및 통풍의 불리, 우천시 소음, 조망권 제한, 채광간섭, 빛의 산란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소화전 등의 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는 시공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외부 공개공지, 드라이에어리어(DA), 차량진출입구, 음식물쓰레기보관소, 자전거 거치대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PIT층에 배수용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발전기 동작시 소음, 진동, 매연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단지 내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는 관할 소방서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건물의 명칭, 호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 기관의 심의/자문 결과 및 현장여건 따라 입주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법규(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받은 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주차차단기(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계단은 오피스텔과 타 시설이 연결되어 있으며(지하주차장 포함), 유사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층고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과 타 시설의 주차는 통합으로 관리 운영되므로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가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리주체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일부는 비상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로가 계획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전 관리 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 출입구, 놀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및 오피스텔 주 현관 출입구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 시 수량이나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물로서 원활한 교통통제 및 운영을 위하여 혼용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용도별 주차구획도 혼용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본 부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배치 특성상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추후 판매시설 등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펜스 설치 및 변경, 제거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 조경, 조경시설물 및 사업지내 보행공간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미술장식품의 형태, 크기, 위치는 향후 미술장식품 관련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호실은 접근성, 조망, 소음 등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 납부의 주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배기휀 등 공용 기기의 유지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 · 하 · 오수 · 지역난방 · 도시가스 ·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항공법 및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 건물 옥상층과 건물 외벽에는 항공장애등이 설치될 경우 주간이나 야간에 눈부심이나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항공청과 협의과정에서 위치나 수량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붕층 및 옥탑층에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연료전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갑 등"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 보관함은 지상1층 아파트 출입구 인근에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와 동선이 상이할 수 있고 실제 설치 위치 및 개소,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건축물의 관리단이 형성되어 관리를 개시하는 시점까지 분양(공급)계약시 제공받은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본 건축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전기, 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우수조, 지역열원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및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될 예정입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조경수 식재 위치, 마감재료, 형태, 색채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건물 남측에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가 계획되어 있는 바, 인접한 세대에서는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차량 불빛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견본주택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 유지 ·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실내조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부에는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보관소 및 D/A 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경관 침해 및 분진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의 타사의 마감사양, 시설 및 조경 등과 본 건축물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시설, 조경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6층 소화펌프실 하부세대의 천장속은 소방용 배관 설치 및 소방제연팬룸, 펌프 기계실 등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시 호실별 옵션 선택에 따라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위치, 사양,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9층 하부 PIT공간에 제연 팬 및 판매시설 일부 에어컨 실외기 & 탈취 설비가 설치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 세대에서는 소음, 냄새,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는 공용사용하며 각 실별로 부과됩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오피스텔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실내 실 간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다른 벽체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지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 · 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 · 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조경석,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등은 계약해제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경계선에 인접한 건물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광고 공고 이전 개발계획 ·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제작 · 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사전분양홍보관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부지 내에는 입주자 및 외부 지역주민이 사용 가능한 조경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통제 또는 통제를 위한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공개공지, 필로티, 제연휀룸, D/A(설비 환기구), 자전거 거치대, 판매시설, 관리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호실은 일조권 · 조망권 · 소음 · 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호실은 업무시설로 인한 소음 발생, 상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일조권, 조망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호수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상가 영업제한, 용도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명칭, 호표시, 건물 외관 및 외부색채, 외부상세계획, 그래픽, 조경 등은 해당관청과 협의(자문) 과정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경계 담장 설치여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있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형태로 인해 각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환기 불리, 소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호실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부대복리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호실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호실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 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옥외시설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단지 내 비상차로와 인접한 저층 및 일부 호실은 소음, 매연, 먼지 등의 환경오염,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업부지, 현장여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출입구, 주차관제시스템의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 구조형식 등이 층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층 및 출입구별로 상이하며, 본 공사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건물은 커튼월 외부 마감으로 되어 있어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삿짐 사다리차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는 차로는 2.3m, 주차 공간은 2.1m 기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은 비상차량(소방차, 구급차 등)외 진입 및 주 · 정차가 불가합니다. • 각 호실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견본주택상의 단지 모형 등의 홍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호실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단지 배치상 동일 형별(평형)이라도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저층 석재색상, 문주,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등의 계획은 인 · 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 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주변 연결녹지,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하2층에 위치하며 음식물 수거장은 지상에 위치계획 되어 있으며 이는 공사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활용폐기물 보관소는 지하2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 주변 건물 및 구조물의 신축,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동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 또는 동파방지장치가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어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어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통로 및 주출입구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출입 통제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호실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호실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다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식재 등에 의해 특정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견본주택에서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행동선, 안전성, 이용 편의성 등에 따라 본 시공시 위치가 삭제되거나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악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지상3층 판매시설이 위치하며 지상9층 하부PIT층에는 주방배기탈취기가 설치될 수 있어 이용에 따른 소음 및 간섭, 음식냄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상부에 주방배기탈취설비 및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냄새, 소음 및 진동, 호실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각 실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결정되며,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단, 유관부서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판매시설 실외기실은 지상 실외기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상 PIT층 외부공간 내 실외기를 설치함에 따라 소음 및 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재활용폐기물보관소, 주방 탈취설비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해충,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피트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배선위치 및 오 · 배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오 · 배수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홀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치에 따라 일부 실에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실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 부지 일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공고지역(지역난방 의무사용 지역)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지상1층에 Dry Area(급배기타워)와 도시가스 관련시설, 맨홀 등 공동사용을 위한 기반시설물이 대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설비는 난방과 냉방의 동시 사용은 불가하며 공급되는 열원에 따라 난방 및 냉방의 계절에 따른 선택이 가능함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현된 점검구 위치 및 크기, 수량은 본 공사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호실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결정되며,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설비이며, 본 공사 시 소방법규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 열교환 환기장치의 설치 위치 및 환기 디퓨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구(급/배기용)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 겸용 제품이며, 본 공사시 냉방전용 팬코일유니트가 설치되며, 개별적인 냉난방장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실외기실은 구획되어있지 아니한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각 오피스텔별 냉방설비의 성능은 실별,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오피스텔별 난방 사용요금은 각 오피스텔별 개별 계량기(난방용)에 의하여 부과되고 냉방은 방재실에서 집계하여 개별 부과 됩니다. • 본 건물 공용부(복도 등)에는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임의로 설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본 건물 전용면적 내 기계설비로 인하여 전용면적 내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 공용부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고, 복도 일부에 판매시설용 가스관이 노출 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 환기설비로 인하여 사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인근에 맨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해 공용복도 및 공용공간의 천장 내부로 우수관이 관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로, 소음 등의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9~15층 공용복도(총 2개소)에는 승강식피난기실이 설치될 예정이오니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내부는 기계설비 및 관련 덕트, 배관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고, 그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복도 및 전용면적내 일부구간 천장고가 낮아지는 등 시공 상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 및 피트층, 각 층의 공용 피트 공간은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로 사용되며, 피트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IT층에 비상 발전기가 설치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 세대에서는 소음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 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PS(전기실)/TPS(통신실)는 필요한 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법적 시설로서 그 위치 및 면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DF실 및 방재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부 장비 및 서버는 시설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며,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및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준공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BF인증포함)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시 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실 및 마감재	• 견본주택 내 건립되는 오피스텔은 65타입이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 또는 카다로그를 참고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호실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호실 내 설치되는 내/외부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브랜드,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에 설치되는 현관, 창고, 점검구 등의 도어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실제 시공시 브랜드, 재료,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등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호실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타입별 침실2 도어 선택 안 에 따라 배선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설치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2C, 66 욕실 양변기 위치 및 젠다이 하부 입면은 천장보 위치에 따라 다른 타입과 상이하오니 미건립 모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사전분양홍보관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현관 바닥, 욕실 타일 등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현관 디딤판에 시공줄눈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의 일부창은 소방기준에 따라 배연창이 적용될 예정이며, 배연창이 설치된 창은 수동 개폐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의 일부창이 소방관 진입창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자세한 형태와 위치는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박이류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타일, 도장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천장, 실 상부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등의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에는 주방후드 상부장 내 주방용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내 현관 및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에는 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가스쿡탑 등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9~10층 세대는 완강기 설치대상이며 실내에 노출 설치되고 벽걸이식과 바닥 고정형이 세대 구조에따라 적용되며 해당법령에 따라 시공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은 단열 구간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비 난방구역으로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수전이 있는 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다용도실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조명기구,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주방TV, 월패드, 디지털 도어록 등 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각 호실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냉방설비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환기 설비는 거실 상부에 노출로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 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고효율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실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호실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실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 허가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장치가 실내부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과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승강식피난기실는 호실 외부에 설치 구획되어 화재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식피난기실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식피난기실 관련, 비상대피 시 추락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환기설비의 외부 입면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주방/화장실 배기설비는 중앙AD배기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 본 공사 시 실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실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됩니다. • 침실이 인접실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내 설치되는 악세사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본 공사시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세탁실내 손빨래수전이 설치 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양변기주변,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을 위한 박스 커버가 노출됩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 시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인터넷 미사용 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기술 개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전제품에 따라 연동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동체감지기 설치는 9층,10층,15층에 한하여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침실에 적용되는 전자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 · 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제어의 통합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 · 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제어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쿡탑 설치 시 전기차단기가 설치되며, 추가 설치 및 변경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대복리 시설	• 한전 인입장비 및 한전패드, 통신인입 맨홀이 단지 내에 설치되므로 일부 호실에서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 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내력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과 타 시설의 주차공간은 층별, 평면별 로 분리되어 있으나, 사용상의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주차장 진출입 및 이용 동선으로 인해 주변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의 주차 구획은 각 층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주차대수가 일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 바라며, 주차대수 및 주차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업자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

구분	시행자	시공자	분양대행사
상호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	㈜호반건설	(주)씨앤디플래닝
법인등록번호	274371–0012509	204711–0007384	110111–6266111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감리회사	감리 금액	비고
건축감리	한미글로벌(주)	3,153,850,101	
전기감리	한미글로벌(주)	742,284,095	
소방/통신 감리	한미글로벌(주)	943,865,804	

※ 상기 감리금액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판매시설 등 전체 건물에 대한 감리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 금액	보증기간
제 05612023–104–0000700 호	일금 삼백오십억사천오백칠십팔만원정 (₩ 35,045,780,000)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오피스텔 및 복리시설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오피스텔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가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우리은행 1005–604–006693)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오피스텔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파크 2관, 1층
• 분양상담전화 : 1670–6207
• 견본주택 운영시간 : 10:00 ~ 17:00

■ 분양홈페이지 : https://www.hobansummit-ys.co.kr/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 오피스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광고와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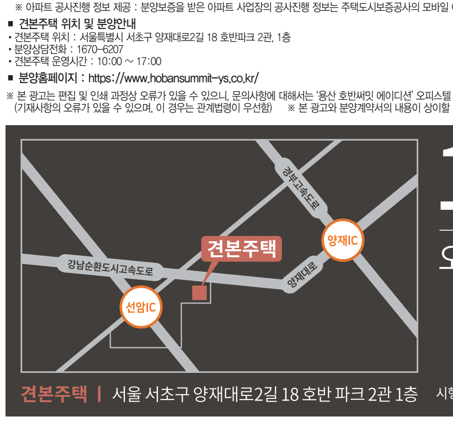

1670.6207

오피스텔 77실 중 **일반분양 49실**

HOBAN

견본주택 |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호반 파크 2관 1층 시행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 시공 **호반건설**